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47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7. 27. 배우자 소유였던 ○○시 B 전 2,15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1. 3.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취득세가 50%로 경감됨[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을 전제로 계산한 금액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했다.

다. 피고는 2022. 8. 12. 이 사건 토지 중 300㎡는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득세 경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해 경감 없이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2,721,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고액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감면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1조로 신설된 제도로써, 제정 당시부터 읍 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구 지방세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취득세의 감



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입법자가 토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한 것으로써, 그로 인한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을뿐더러(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등 결정 참조), 원고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취득세 감면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 문제와 관련도 없다. 아울러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소급적용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1

판사 정○○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호 생략)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농어민후계자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임야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②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끝.